

# 안산시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9-488
----------	-------

제출년월일 : 2024. 8. .  
제 출 자 : 안 산 시 장

## 제안이유

- 안산시 상권활성화재단의 설립목적, 용어의 정의 및 사업 대상에 대한 해석의 불명확한 부분 개정
- 이를 통해 소규모 자영업자 및 미등록 골목상권 등에 대한 지원의 명확성을 높이고 재단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자 함.

## 주요내용

- 설립 목적의 명확성 제고(안 제1조)
- 용어의 정의 관련 법령 수정(안 제2조)
- 재단 사업 관련 조문의 체계적 정리(안 제5조)
-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명시(안 제5조)
- 재단 사업 추진 시 지역 상권의 균형발전 고려 의무 신설(안 제5조)

- 일부개정조례안 : 【붙임 1】
- 신·구조문대비표 : 【붙임 2】
- 관계법령발췌서 : 【붙임 3】
- 관련사업계획서 : 해당사항 없음
- 예산수반사항 : 해당사항 없음

※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【붙임 4】

사전예고(결과) : 의견없음

○ 입법예고 : 2024. 6. 19. ~ 7. 9. (21일간)

기타 참고사항

○ 현행조례 : 【붙임 5】

○ 방침결정문 : 【붙임 6】

**[붙임 1]**

**안산시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**

안산시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상권활성화와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”를 “「소상공인기본법」 제3조에 따른 소상공인의 보호·육성”으로, “상권관리기구로서”를 “상권관리기구로서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”로 한다.

제2조 중 “「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”를 “「소상공인기본법」 제2조”로 한다.

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5조(재단의 사업) ①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.

1. 전통시장법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상권활성화 사업

가. 공동시설·고객편의시설의 설치 및 개선, 교통체계 개선 등 고객 접근성 향상 및 환경개선 사업

나. 공동 마케팅, 공동 상품·디자인 개발 등 공동사업

다. 빈 점포 활용, 청소 및 노점관리 등 상권관리사업

라. 고객 및 지역주민 대상 문화시설 설치 및 문화프로그램 운영 등 고객유치사업

**[붙임 2]**

**신·구조문대비표**

현 행	개 정 안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<u>상권활성화와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 및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19조의8에 따른 상권관리기구로서</u> 안산시 상권활성화재단을 설립하고,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	<p>제1조(목적) ----- 「<u>소상공인기본법</u>」 제3조에 따른 <u>소상공인의 보호·육성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상권관리기구</u>로서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- ----- ----- -----</p>
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(이하 “전통시장법”이라 한다) 제2조 및 「<u>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</u>」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</p>	<p>제2조(정의)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「<u>소상공인기본법</u>」 제2조 ----- ----- -----</p>

- 마. 관광(테마)거리 조성, 축제·홍보행사 개최 등 상권홍보사업
  - 바. 상권활성화구역 내 오래되고 낡거나 심하게 훼손된 상업기반시설의 정비에 관한 사업
2. 「소상공인기본법」에 따른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
  3. 상권활성화 사업의 계획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및 지원
  4.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국가 또는 안산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의 대행 사업
  5. 그 밖에 상권활성화를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, 광역자치단체의 장 또는 시장(市長)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- ② 재단은 사업 추진 시 지역 상권의 균형발전을 고려하여야 한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소관 실·과		소상공인지원과
입안자	실·과장 직위·성명	소상공인지원과과장 김 유 미
	담당·팀장 직위·성명	소상공인지원팀장 이 갑 순
	담 당 자 성명·전화	노 다 지 (행정 2696)

현 행	개 정 안
<p>제5조(재단의 사업)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.</p> <p>1. <u>전통시장법 제19조의8제1항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업</u></p> <p>가. <u>상권활성화사업의 계획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및 지원</u></p> <p>나. <u>상권활성화 사업</u></p> <p>다. <u>상권활성화와 관련된 사업으로서 시장(市長)이 위탁하는 사업</u></p> <p>라. <u>그 밖에 재단 업무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장(市長)이 상권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</u></p> <p>&lt;신 설&gt;</p> <p>&lt;신 설&gt;</p>	<p>제5조(재단의 사업) ①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.</p> <p>1. <u>전통시장법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상권활성화 사업</u></p> <p>가. <u>공동시설·고객편의시설의 설치 및 개선, 교통체계 개선 등 고객 접근성 향상 및 환경개선 사업</u></p> <p>나. <u>공동 마케팅, 공동 상품·디자인 개발 등 공동사업</u></p> <p>다. <u>빈 점포 활용, 청소 및 노점관리 등 상권관리사업</u></p> <p>라. <u>고객 및 지역주민 대상 문화시설 설치 및 문화프로그램 운영 등 고객유치사업</u></p> <p>마. <u>관광(테마)거리 조성, 축제·홍보행사 개최 등 상권홍보사업</u></p> <p>바. <u>상권활성화구역 내 오래되고 낡거나 심하게 훼손된 상업기반시설의 정비에 관한 사업</u></p>

현행	개정안
<p>2. <u>전통시장법 시행령 제8조의2 제1항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업</u></p> <p>가. <u>공동시설·고객편의시설의 설치 및 개선, 교통체계 개선 등 고객 접근성 향상 및 환경개선 사업</u></p> <p>나. <u>공동 마케팅, 공동 상품·디자인 개발 등 공동사업</u></p> <p>다. <u>빈 점포 활용, 청소 및 노점관리 등 상권관리사업</u></p> <p>라. <u>고객 및 지역주민 대상 문화시설 설치 및 문화프로그램 운영 등 고객유치사업</u></p> <p>마. <u>관광(테마)거리 조성, 축제·홍보행사 개최 등 상권홍보사업</u></p> <p>바. <u>상권활성화구역 내 오래되고 낡거나 심하게 훼손된 상업기반시설의 정비에 관한 사업</u></p>	<p>2. 「<u>소상공인기본법</u>」에 따른 <u>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</u></p> <p>&lt;삭 제&gt;</p> <p>&lt;삭 제&gt;</p> <p>&lt;삭 제&gt;</p> <p>&lt;삭 제&gt;</p> <p>&lt;삭 제&gt;</p> <p>&lt;삭 제&gt;</p>

현행	개정안
<p><u>3.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국가 또는 안산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의 대행 사업</u></p> <p>&lt;신설&gt;</p> <p>&lt;신설&gt;</p> <p>&lt;신설&gt;</p>	<p><u>3. 상권활성화 사업의 계획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및 지원</u></p> <p><u>4.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국가 또는 안산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의 대행 사업</u></p> <p><u>5. 그 밖에 상권활성화를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, 광역자치단체의 장 또는 시장(市長)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</u></p> <p><u>② 재단은 사업 추진 시 지역상권의 균형발전을 고려하여야 한다.</u></p>

# 안산시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제9-488호
----------	---------

제안년월일 : 2024. 9. 2.

제안자 : 기획행정위원장

## 수정이유

- 안 제5조제1항제1호 가목에서 바목까지 「전통시장법 시행령」 제8조의2 제1항제1호에서 제6호까지 규정된 상권활성화사업 지원대상의 내용을 그대로 재기재하여 이를 삭제하고 상위법 조항만 표기하고자 함
- 법령의 포괄위임 금지 원칙에 따라 법령명을 삭제

## 주요골자

- 안 제5조제1항제1호 가목에서의 재기재 내용 삭제 (안 제5조제1항제1호)
- 「소상공인기본법」 삭제 (안 제5조제1항제2호)

# 안산시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안산시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5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「전통시장법 시행령」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상권활성화 지원사업

안 제5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바목까지를 각각 삭제하고, 같은 항 제2호중

“「소상공인기본법」에 따른 소상공인”을 “소상공인”으로 한다.

## 수정안 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(의회) 수정안
<p>제5조(재단의 사업)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.</p> <p>1. 전통시장법 제19조의8제1항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업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em;">가. 상권활성화사업의 계획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및 지원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em;">나. 상권활성화 사업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em;">다. 상권활성화와 관련된 사업으로서 시장(市長)이 위탁하는 사업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em;">라. 그 밖에 재단 업무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장(市長)이 상권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</p> <p>&lt;신 설&gt;</p> <p>&lt;신 설&gt;</p>	<p>제5조(재단의 사업) ①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.</p> <p>1. 전통시장법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상권활성화 사업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em;">가. 공동시설·고객편의 시설의 설치 및 개선, 교통체계 개선 등 고객 접근성 향상 및 환경개선 사업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em;">나. 공동 마케팅, 공동 상품·디자인 개발 등 공동 사업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em;">다. 빈 점포 활용, 청소 및 노점관리 등 상권관리사업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em;">라. 고객 및 지역주민 대상 문화시설 설치 및 문화 프로그램 운영 등 고객유치 사업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em;">마. 관광(테마)거리 조성, 축제·홍보행사 개최 등 상권홍보사업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em;">바. 상권활성화구역 내</p>	<p>제5조(재단의 사업) ①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.</p> <p>1. 「전통시장법 시행령」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상권활성화 지원사업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em;">가. ~ 바. (삭제)</p>



현 행	개 정 안	(의회) 수 정 안
<p>3.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국가 또는 안산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의 대행 사업 &lt;신 설&gt;</p> <p>&lt;신 설&gt;</p> <p>&lt;신 설&gt;</p>	<p>3. 상권활성화 사업의 계획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및 지원</p> <p>4.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국가 또는 안산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의 대행 사업</p> <p>5. 그 밖에 상권활성화를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, 광역자치단체의 장 또는 시장(市長)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</p> <p>② 제단은 사업 추진 시 지역 상권의 균형발전을 고려하여야 한다.</p>	<p>3.(개정안과 같음)</p> <p>4.(개정안과 같음)</p> <p>5.(개정안과 같음)</p> <p>② (개정안과 같음)</p>